

제31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 (2025년도)

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  
(도시관리국)

2025.09.04.

전문위원 송 세 창

1. 제안이유

- 2025년 8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세입 현황

-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	기정액	비 교 증 감	
			증(△)감	비율(%)
계	6,910,134	4,347,939	2,562,195	58.93
일반회계	5,688,999	3,351,998	2,337,001	69.72
특별회계	1,221,135	995,941	225,194	22.61

부서별 현황 (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)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예산액	기정액	비 교 증 감	
			증(△)감	비율(%)
계	6,910,134	4,347,939	2,562,195	58.93
일 반 특 별 회 계	주택정책과	1,855,092	1,630,999	224,093 13.74
	주거정책과	807,300	1,000	806,300 80,630
	도시계획과	1,639,722	889,000	750,722 84.45
	건축과	922,130	696,936	225,194 32.31
	공원녹지과	1,685,890	1,130,004	555,886 49.19

세입 검토의견

\*금액 단위 첫째 자리 반올림

○ 도시관리국 세입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43억4,794만원에 25억6,220만원 (58.93%, 일반회계 23억3,700만원, 특별회계 2억2,519만원) 증액된 69억 1,0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

○ 주택정책과 세입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16억3,100만원에 2억2,409만원 (13.74%) 증액된 18억5,509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시·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△38만원이 감액(시비)1)되었으며,
- 시·도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 사업(성립전) 2억 1,836만원(시비)2) 추가편성 되었음.

- 시·도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 60만원(시비 800만원 → 860만원)이 추가 편성<sup>3)</sup>되었으나 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△60만원(4,200만원 → 4,140만원)을 감액하여 편성함.
- 시·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3만원(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 미집행 잔액) 및 시·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29만원(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지원사업)이 편성 되었음.

○ 주거정비과 세입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100만원에 8억630만원(80,630%) 증액된 8억730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시·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 용역(성립 전) 8억630만원<sup>4)</sup>(시비) (2025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동 219-90번지 및 장위동 224-12번지 일대)이 편성 되었음.

#### \*참고 <표1.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 (안)	기정예산	증 감	산 출 내 역
계	1,612,600	1,210,000	402,600	-
시 설 비	시806,300	0	806,300	[성립전]장위동 219-90 및 224-12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÷ 2(시비 50%)
	구806,300	1,210,000	△403,700	장위동 219-90 및 224-12번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÷ 2(구비 50%)

○ 도시계획과 세입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8억8,900만원에 7억5,072만원 (84.45%)증액된 16억3,972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시·도비 보조금 등으로 2025년 안암동 캠퍼스 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억8,100만원(시비)<sup>5)</sup>이 편성되었으며,
- 시·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454만원과 시·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억6,519만원(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억2,766만원,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(서경대 5,609만원, 한성대 7,591만원, 동덕여대

178만원, 국민대 374만원))이 편성되었음.

○ 건축과 세입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6억9,694만원에 2억2,519만원(32.31%)

증액된 9억2,213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(성립 전)2,133만원<sup>6)</sup>(국고보조금 1,333만원, 시비보조금 800만원)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으며,
- 시·도비보조금 등(성립전)으로 9,033만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음.
  -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4,368만원
  -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745만원(돈암동 74-331 조적옹 벽 정밀안전점검)
  - 민간안전취약시설 보수·보강사업 2,000만원(정릉동 508-1 스카이로얄빌라 외벽 보수공사)
  - 주거안전취약계층(반지하주택)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1,120만원(7개소 설치예정)
  -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800만원
- 순세계잉여금은 △6,925만원 감액하고<sup>7)</sup>,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1,694만원 및 시·도비보조금사용잔액 7,384만원이 편성되었음.

○ 공원녹지과 세입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11억3,000만원에 5억5,589만원

(49.19%) 증액된 16억8,589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억2,080만원(성립전)(폭염저감시설 설치 2억 7,000만원,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 지원 1억5,080만원)
- 국고보조금 7,805만원(일반 병해충 방제 △1,461만원 감액, 산림병해충 이동단속 866만원(국비,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인), 숙정문 안내소 철거

및 주변정비(성립전) 8,400만원)이 편성되었음.

- 시·도비보조금으로 숙정문 안내소 철거 및 주변정비 외4건 4,105만원,
-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1만원 및 시·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,448만원이 편성됨.

### 3. 세출현황

####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
			증(△)감	비율(%)
계	27,098,259	24,617,381	2,480,878	10.08
일반회계	26,039,839	23,784,155	2,255,684	9.48
특별회계	1,058,420	833,226	225,194	27.03

#### 부서별 현황 (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)

(단위 : 천원)

부서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
			증(△)감	비율(%)
계	27,098,259	24,617,381	2,480,878	10.08
일반회계	주택정책과	2,233,876	1,997,915	235,961 11.81
	주거정책과	1,826,662	1,287,033	539,629 41.93
	도시계획과	2,515,225	1,743,138	772,087 44.29
	건축과	1,574,638	1,349,444	225,194 16.69
	공원녹지과	18,947,858	18,239,851	708,007 3.88

## □ 세출 검토의견

\*금액 단위 첫째 자리 반올림

-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246억1,738만원에서 270억9,826만원으로 24억8,088만원(10.08%)<sup>8)</sup> 증액 편성됨.
- 일반회계는 237억8,416만원에서 260억3,984만원으로 22억5,568만원(9.48%) 증액, 특별회계는 8억3,323만원에서 10억5,842만원으로 2억2,519만원(27.03%) 증액됨.
- 부서별 주요 증액 현황은 도시계획과(7억7,208만원), 공원녹지과(7억800만원), 주거정비과(5억3,963만원), 주택정책과(2억3,596만원), 건축과(2억2,519만원) 순임.
- 이번 추경은 주택·재개발 지원, 도시재생 활성화, 건축물 안전관리, 공원·녹지 기반 확충,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. 주요 내용은,
  - 주택정책과 (증액 2억3,596만원)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, 노후주택 화재예방, 모범관리단지 지원 등 생활밀착형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반영.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시·구비 재원 조정 성격으로 총액 변동 없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·화재예방 목적의 증액임.
  - 주거정비과 (증액 5억3,963만원) 장위 재정비촉진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(시·구비 매칭)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전문관리 용역 등 반영함. 장위7구역 학교용지부담금 전액환급에 따른 징수교부금 반환<sup>9)</sup>.
  - 도시계획과 (증액 7억7,208만원)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비 2차 교부금 반영. 창업육성, 문화가로 조성, 스타트업 하우징 등 지역경제·청년창업 기반 확대.
  - 건축과 (증액 2억2,519만원, 특별회계)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점검, 민간취약시설 정밀진단·보수, 화재안전성능 보강, 반지하 방범창 설치 등 안전사업 반영. 결산잉여금에 따른 기금 예탁금 증액도 포함.
  - 공원녹지과 (증액 7억800만원) 폭염저감시설 설치, 산불예방 장비 확충 등 기후위기 대응과 주민 체감형 편의사업 다수 반영. 개운산 책

쉼터 조성, 아동 놀 권리 놀이공간 조성, 숙정문 안내소 정비 등 생활·문화환경 개선. 일반 병해충 방제는 산림청 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.

#### \*참고 <표2.> 세부사업별 증액·감액 내역표

(단위 : 천원)

부서	세부 사업명	기정예산	추경예산	증감
<b>주택정책과</b>	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	25,640	25,256	△384
	소규모(노후) 공동주택 화재예방	0	10,500	10,500
	모범관리단지 지원	0	218,360	218,360
	공동주택 실태조사(재원조정)	50,000	50,000	0
	(보조금 반환 등)	-	7,480	7,480
<b>소계</b>		75,640	311,596	<b>235,956</b>
<b>주거정비과</b>	장위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	1,210,000	1,612,600	402,600
	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용역	4,400	40,480	36,080
	학교용지부담금 반환	0	90,065	90,065
<b>소계</b>		1,214,400	1,743,145	<b>528,745</b>
<b>도시계획과</b>	안암동 캠퍼스타운 활성화	889,000	1,270,000	381,000
	(보조금 반환 등)	-	391,080	391,080
<b>소계</b>		889,000	1,661,080	<b>772,080</b>
<b>건축과(특별회계)</b>	임의관리대상 안전점검	0	39,380	39,380
	찾아가는 안전점검	0	4,296	4,296
	민간취약시설 정밀진단	9,450	16,900	7,450
	민간취약시설 보수·보강	0	20,000	20,000
	화재안전성능 보강	0	21,333	21,333
	반지하 방범창 설치	0	11,200	11,200
	내부거래(기금예탁)	470,236	584,815	114,579
	보조금 반환 등	-	4,500	4,500
	예비비	-	2,450	2,450
<b>소계</b>		489,136	704,874	<b>215,738</b>
<b>공원녹지과</b>	도시공원 유지관리	202,800	252,800	50,000
	폭염저감시설 설치	0	270,000	270,000
	개운산 책쉼터 조성	350,000	400,000	50,000
	아동 놀 권리 놀이공간	1,600,000	1,647,530	47,530
	숙정문 안내소 철거·정비	0	120,000	120,000
	산불예방·진화장비 확충	0	150,800	150,800
	유해야생동물 관리	0	3,500	3,500
	생태계교란 식물 관리	0	4,000	4,000
	일반 병해충 방제	79,480	48,032	△31,448
	산림병해충 이동단속	0	17,324	17,324
	(보조금 반환 등)	-	26,300	26,300
<b>소계</b>		2,532,280	2,940,286	<b>407,006</b>

#### 4. 검토결과

-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·제142조<sup>10)</sup>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됨. 주거환경 개선, 도시재생 활성화, 건축 안전 강화, 공원·녹지 관리, 기후위기 대응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되었으며,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특히 폭염저감시설, 산불예방 장비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는 시의적절하며, 주거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또한 지역 활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편성 사유와 요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.

- 
- 1) 기정예산 대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감추경 (15,384천원 ⇌ 15,000천원)
    - ▷ 위치 : 대원연립(길음동 1083), 이화연립(정릉동895), 스카이연립(정릉동 670-24), 정수빌라(정릉동 431-70)
    - ▷ 규모 : 4개 단지 13개동
    - ▷ 사업기간 : 2025.9.~2025.11.
    - ▷ 사업내용 :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
    - ▷ 사업비 : 25,256천원(시비 15,000천원, 구비 10,256천원)
  - 2)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(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-3755) 우리구 13개 단지 최종선정 및 보조금 교부
    - ▷ 사업기간 : 2025. 5. ~ 2025. 12.
    - ▷ 사업내용 : 관리노동자 및 공동주택 구성원간 배려·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시 보조금 지원
    - ▷ 지원내용 :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, 공용집기 및 물품구매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
    - ▷ 사업비 : 2억1,836만원(1개 단지별 최대 3,000만원 지원)
  - 3) 공동주택 실태조사
    - ▷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(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)
    - ▷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
    - ▷ 2025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종합계획(내부방침)
    - ▷ 사업기간 : 2025년 3월 ~ 12월
    - ▷ 조사대상 : 8개 단지 (길음2차(5단지), 돈암현대, 꿈의숲푸르지오, 정릉퐁립아이원, 길음3차(6단지), 돈암삼성, 정릉우성, 종암래미안세레니티)

- ▷ 조 사 자 : 1개조 5명으로 편성(기술사, 회계사, 주택관리사, 퇴직공무원 등)
- ▷ 사업내용 : 아파트 전반적인 운영관리(사업자선정 등 공사·용역,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·회계,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리일반 등)에 대한 점검
- ▷ 사업비 : 5,000만원(시비 860만원, 구비 4,140만원)
- 4)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구역에 대한 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당초 요청액보다 감소하여 감소된 교부액에 맞춰 예산을 감액하고, 1차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부받은 시비 보조금(성립전)에 대하여 예산 편성 요청하고자 함.
- 5) 본 사업은 국비·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025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(시비 100%) 추진 관련, 서울시 2차 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.
- ▷ 위치 : 성북구 안암동5가 일원
- ▷ 규모 : 171,000㎡
- ▷ 사업기간 : 2020년 ~ 2025년(6개년)
- ▷ 사업내용 : 거점시설(창업 스테이션 등) 조성, 창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, 스타트업 하우징 및 문화가로 및 주거지 안전거리 조성
- ▷ 사업비 : 총 사업비 486.2억원[국비 100억, 시비 168.7억, SH 202.7억, 기타(SH기금, 고대) 14.8억]
- 6)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가연성 외장재 교체,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 지원(「건축물관리법」제27조~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등)
- ▷ 대상시설 : 건축물(피난약자이용시설, 다중이용업소)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3층 이상 건축물, ② 가연성 외장재 사용(예: 드라이비트 공법 등), ③ 스프링클러 미설치
- \* 단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, 연면적 1,000㎡이하 건축물에 한함
- \* 피난약자이용시설 : 의료시설(요양병원 제외), 노유자시설, 지역아동센터, 청소년수련원
- \* 다중이용업소 : 고시원(다중생활시설), 목욕장, 산후조리원, 학원

- ▷ 사업기간 : 2025.12.31. 까지
- 7)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,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보조금 반환금 발생 등에 따른 세출예산(예탁금) 추경 편성
- 8) 증액률 산식( $2,480,878 \div 24,617,381 \times 100 = 10.08\%$ )
- 9) 2019.8.12.자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(3,002,163,360원) 부과 후 수납하였으나,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면제사항(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두47862 판결)에 의거 전액환급 처리
- ▷ 「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·운용 조례」제3조제2항에 따라 市 공동주택과로부터 징수액의 3%(90,064,900원)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납하였으나, 징수교부금 반납 사유 발생(학교용지부담금 전액환급)에 따라 반납 필요
- ▷ 발생이자의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제4항에 따라 감면 검토 기 요청

#### 10)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#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